
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

전문개정 1995년 12월 1일 규칙 제311호

개정 1998년 11월 25일 규칙 제374호

(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때 따른

오산시기획업무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료징수) 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례 제7조의 경우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전용사용료는 선납하고 예매시는 판매예상액의 1%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관람권의 종류 및 금액)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특별관람권
2. 일반관람권
3. 군경 및 학생관람권
4. 단체관람권(일반 또는 군경 · 학생)
5. 경로우대권
6. 어린이 관람권(국교생)

제4조(예매표)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.

제5조(상업사용료 산출방법) 조례 제6조 별표의 제3호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,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.

제6조(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)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을 경기 또는 행사종료후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.

제7조(출입증발급) ① 출입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발급한다.

1. 경기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2.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②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은 별지 제7-1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료의 납부)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제9조(부대시설) ① 사용자와 위탁관리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특별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가부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각종서식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.

제1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

제2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허가서

제3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변경 신청서

제4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변경 신청서

제5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특별부대 설비허가 신청서

제6호서식 : 입장권

제7호서식 : 출입증

제7-1호서식 : 출입증 발급대장

제8호서식 : 라디오, 텔레비전 방송중계신청서

제9호서식 : 사용료 반환청구서

제9-1호서식 : 영수증서

제10호서식 : 직매예매 관람권 잔표 확인서

제11호서식 : 대회관람권 검인신청서

제12호서식 : 관람권 폐기확인서

제13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

제14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사용허가대장

제15호서식 : 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 특별부대 설치 접수대장
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

부칙 〈1995. 12. 1 조례 제401호〉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및 오산시시민회관관리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.
- ③(다른 규칙의 폐지) 종전의 오산시시민회관관리규칙 및 오산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에 폐지한다.

부칙 〈1998. 11. 25 규칙 제374호〉

-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허가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								
	성 명		전화번호									
	(법인또는단체인 경우법인단체명 과 그 대표자명)		주민등록 번호									
사 용 목 적				추정인원								
사용시시설명 및사용내용			중계방송									
			기 타									
경기행사명												
사 용 기 간	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	시까지							
	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	시까지							
임 원 또 는 지 도 방 문	임원	인	지도요원	인	계 인							
	임원	인	방송(촬영)	인	요원 인							
	특 별 관 랐 권	원 매	단체군경관람권	원 매								
	일 반 관 랐 권	원 매	초 대 권	원 매								
	군경·학생관람 권	원 매	예 매 처	원 매								
	단체일반관람권	원 매	비 고	원 매								
기 타												
사 용 료	원											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.		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		
첨부 : 사용(사업)계획서 1부 신청인				(인)								
오 산 시 장 귀하			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허가서

허가번호		주 소			
신 청 인	성 명		전화번호		
	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 과 그 대표자명)		주민등록 번호		
사 용 목 적				추정인원	
사용시시설명 및사용내용					
경기행사명					
사 용 기 간	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	시까지
	야간	년 월 일	시부터	년 월 일	시까지
관 램 권 또는 기 타					
허 가 조 건	1.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측에서 책임진다. 2.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 해야 한다. 3. 시정시책과 운동장 관리상 사용중단을 요구할시는 이 에 응한다. 4. 수허가자는 사용목적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5.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조치를 책임진다.				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오 산 시 장 (인)	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변경신청서

신 청 인	주 소									
	성명(법인또는 단 체 인 경 우 단 체 명 과 그 대 표 자 명)		전화번호							
			주민등록 번 호							
허 가 사 항	허 가 내 용		변 경 신 청 내 용							
사 용 구 분										
사용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										
경기행사명										
사 용 기 간	주 간									
	야 간									
관 램 권 또는 기 타										
허 가 조 건	1.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측에서 책임진다. 2.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 해야 한다. 3. 시정시책과 운동장 관리상 사용중단을 요구할시는 이 에 응한다. 4. 수허가자는 사용목적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5.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조치를 책임진다.									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.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오 산 시 장 (인)				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변경허가서

신 청 인	주 소					
	성명(법인또는 단 체 인 경 우 단 체 명 과 그 대 표 자 명)		전화번호			
			주민등록 번 호			
허 가 사 항	허 가 내 용		변 경 신 청 내 용			
사 용 구 분						
사용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						
경기(행사)명						
사 용 기 간	주 간					
	야 간					
관 램 권 또는 기 타						
허 가 조 건	1.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측에서 책임진다. 2.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. 3. 시정시책과 운동장 관리상 사용중단을 요구할시는 이에 응한다. 4. 수허가자는 사용목적의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5. 사용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조치를 책임진다.					
오산시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합니다. 년 월 일 오 산 시 장 (인)						

[별지 제5호서식]

종합운동장·시민회관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서

주 소

성 명

시설내용

시설사유

1.

2.

3.

상기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 설비가 필요하옵기에 오산시종합운동장·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입 장 권	
일금	원
오 산 시 장	
(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소장) (인)	
주 1. 대인, 소인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. 2. 마크는 다른색으로 인쇄한다.	

[별지 제7호서식]

출 입 증	
시 마크 삽입	
오 산 시 장	
(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소장) (인)	
1. 대인, 소인별로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. 2.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 3.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. 4. 본 증서 운동장출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	

[별지 제7-1호서식]

출 입 증 발 급 대 장

번 호	소 속	성 명	발 행 년 월 일	유효기간	회 수 년 월 일	비 고

[별지 제8호서식]

(운동장, 시민회관)

라 디 오 텔레비전 방송중계신청서			
경 기 명			
경 기 일 시			
중 계 사 용 료		광 고 주 명	
전 기 사 용 여 부	사용 자가발전		
위와 같이 신청함. . . . 방송국명 : 방송국 성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최측 승인 : 성명 : 			
오 산 시 장 귀 하			

[별지 제9호서식]

반 환 청 구 서				
제 호		년도		
경기(행사)명				
청 구 자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(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)				
일 금		원정 (₩)		
반환사용료명 :				
위와 같이 청구함. (조례 제 조 제 항) · · · 청구인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				
분 임 경 리 관 귀하				
분임경리관	분임지출원	출 납 원	대 장 정 리	

[별지 제9-1호서식]

영 수 증 서				
제 호		년도		
경기(행사)명				
청 구 자	주 소			
	성 명		전화번호	
(법인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)				
일 금		원정 (₩)		
반환사용료명 :				
위와 같이 청구함. (조례 제 조 제 항) · · · 청구인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				
분 임 경 리 관 귀하				
분임경리관	분임지출원	출 납 원	대 장 정 리	

[별지 제10호서식]

직매예매관람권잔표확인서

대 회 명 :

대회기간 : 자 . . . 지 . . . (일간)

종 별	발 행 수	매 상 수	잔 표 수	비 고

위와 같이 확인 인수함.

. . .

확인자명 (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98. 11. 25>

대회관람권검인신청서				담당자	담 당	소 장		
구	분	매	수	요	금	예매요구함	비	고
특	별	권						
일	반	권						
군 · 경 · 학생권								
일 반 단 체 권								
학 생 단 체 권								
초 대 권								
임 원 선 수 권								

위 대회 관람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함.

. . .

단 체 명
대 표 자

(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[별지 제12호서식]

관 랐 권 폐 기 확 인 서

대 회 명 :

대회기간 : . . . ~ . . . (일간)

구	분	발 행 매 수	매 상 매 수	폐 기 매 수	비 고
특	별 권	매	매	매	
일	반 권	매	매	매	
군 경 · 학 생 권		매	매	매	
일 반 단 체 권		매	매	매	
학 생 단 체 권		매	매	매	
초 대 권		매	매	매	
임 원 · 선 수 권		매	매	매	
계		매	매	매	

위와 같이 폐기하였기 확인함.

. . .

확인자 (인)

입회인 (인)

입회인 (인)

[별지 제13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

번호	접수 일	사 용 물 건 명	신 청 자		사 용 일 자	사 용 목 적	경 집 회 인 원	특 별 부 대 설 비 개 요	사 용 료	기 타	비 고
			주 소	성 명							

[별지 제14호서식]

종합운동장 · 시민회관사용허가대장

허가 일 자	허가 일 시	사 용 물 건 명	신 청 자		허 가 시 간	사 용 목 적	집 회 인 원	특 별 부 대 설 비 개 요	요 금	기 타 사 항	접 수 번 호	비 고
			주 소	성 명								

